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8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26 지분에 관하여 2019. 5. 8. 체결된 증여계약을 7,846,15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26 지분에 관하여 2019. 5. 8. 체결된 증여계약을 7,846,15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5,692,306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F조합은 2003. 11. 23. D와 대출금액 56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5. 11. 28.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D의 F조합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F조합은 2007.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D,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1940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5. 8. 11.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91,161원 및 그중 5,175,682원에 대하여 2015. 8. 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6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2019. 5. 8.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5.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4.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4. 지상권자를 H조합으로 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7.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소극재산은 24,804,401원, E의 소극재산은 합계 202,220,102원이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6 지분 이외에 D, E의 별다른 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 E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스스로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D, E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D, E, 피고의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아버지 사망 이후 피고가 아버지를 부양하고, 병원비, 장례 등에 기여한 사정을 인정하여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이전한 것이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이때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또는 전득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 E이 아버지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중 소유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반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H조합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조합에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D, E에게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 E 소유지분의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22. 1. 1. 기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10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와 유사한 가격일 것으로 추인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 E 소유지분의 각 공동담보가액은 각 7,846,153원($=102,000,000\text{원} \times 2/26$, 원 미만 버림)이고, 이는 원고의 D, E에 대한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와 D,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각 7,846,15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5,692,3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1) 원고는 피고별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가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별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